

◆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김석영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1. 검토 배경 및 목적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영역에서도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보험 개발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본고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안의 의미와 향후 일반손해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양적위주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¹⁾

- 이는 상품개발·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질적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임.

■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²⁾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해 장기저축성 상품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를 유도함.
-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변경함.

■ 본고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안의 의미와 향후 일반손해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3. 30),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3. 29일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감독규정(3. 30일 금융위원회 의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3. 30일 확정)”.

2.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현황³⁾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되어 왔음. 금융당국은 협의요율 적용대상 조건을 강화하여 협의요율 사용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요율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신고면제이기 때문에 사용비중이 증가하여 왔음. 반면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기본 요율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가. 요율체계 현황

■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크게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구분되어 왔음.

- 자사요율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요율임.
- 참조순보험요율⁴⁾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말함.
 - 자사경험을 산출하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제공되는 요율임.
-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출한 요율임.
 -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성보험 계약에 사용됨.
 - 경험부족과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요율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함.

■ 기업성보험 계약은 대형물건으로 갈수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계약과 달리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이 성립하지 않음.

-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계약담보들은 서로 동질적이지 못하고 다양하기 때문임.
 - 손해보험회사는 공장,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보상조건이나 보상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Tailor made)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나 일반손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감독대상에서 협의요율⁵⁾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왔음.

3) 김석영·김혜란(2015),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을 참조.

4)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항.

5) 90년대까지는 협의요율이라는 용어 대신 구독요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과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⁶⁾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에서 일반 손해보험 기업성보험 영역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였음.
- 2011. 1. 24 개정안에서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⁷⁾이 과거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해당함.
 - 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에서 과거 협의요율 적용대상 보험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협의요율 적용대상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협의요율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협의요율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왔음.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대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보험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임.
 - 협의요율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보험 출재가 전제되기 때문에 지나친 협의요율 사용으로 재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출재되는 것을 우려함.
- 따라서 선박보험,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의 협의요율 조건을 각각 500톤에서 1,000톤,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나. 협의요율 적용실적

■ 일반손해보험(보증, 상해 제외)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지난 10년간(FY'03~FY'12)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FY'03년 64.8%였던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CY'14년에는 80.9%로 확대됨(〈표 1〉 참조).

6) 2011. 1. 24 개정안 이전 규정.

7) 기업성보험의 특수성과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표 1〉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

(단위: %)

연도	FY'03	FY'05	FY'07	FY'09	FY'12	FY'13	CY'14
비중	64.8	66.5	66.7	72.4	76.3	78.0	80.9

주: 일반손해보험에서 보증 및 상해를 제외한 사용계약 비중임.

FY'03~FY'12는 금융감독원 보고서의 자료이며, FY'13~CY'14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고서(2014),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책임보험은 FY'05년과 CY'14년의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해상과 기술 보험은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표 2〉 참조).

- 책임보험은 협의요율 비중이 약 64%로 변화가 없으나 해상과 기술은 60%대에서 80%대로 증가함.
- 기타특종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거의 100%로 변화가 없었음.

〈표 2〉 연도별 협의요율 비중

(단위: %)

구분	FY'05	FY'10	FY'13	CY'14
해상	63.2	86.2	85.2	83.3
기술	66.9	72.6	86.4	83.5
책임	64.0	65.5	64.3	63.3
종합	77.6	74.4	83.4	83.7
기타특종	98.2	99.6	99.9	99.9

주: 협의요율 비중은 경과보험료기준임, 화재보험의 협의요율 비중은 5% 미만으로 미미하여 표시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에 대해서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협의요율 및 재보험조건을 결정하였음.

- 거대위험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음.
- 보험종목별로 협의요율 손해율은 약 40%대에서 약 80% 수준이며 종목별 전체 손해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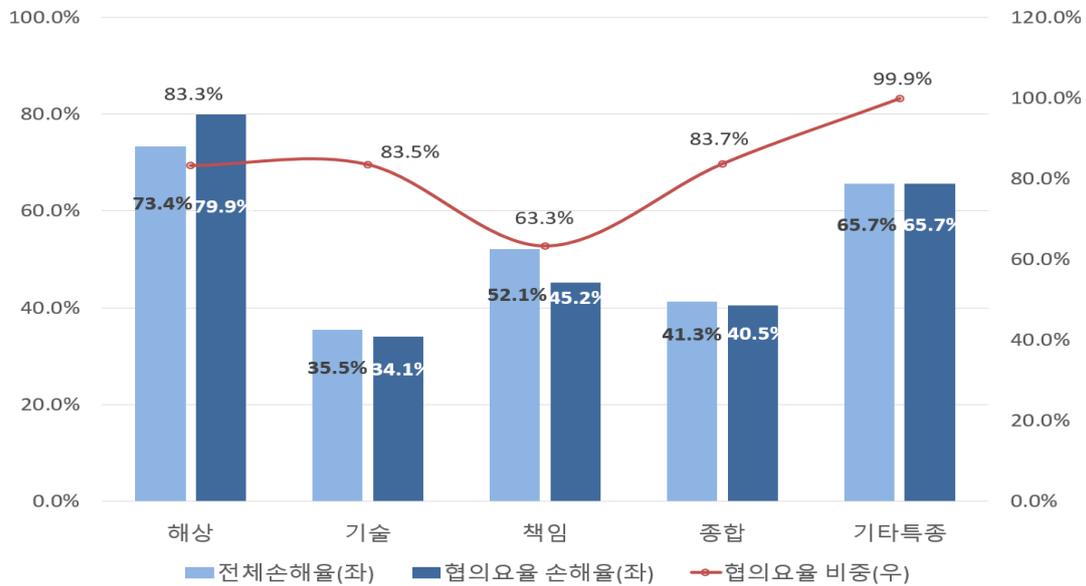
〈표 3〉 연도별 협의요율 원수경과손해율

(단위: %)

구분	전체 손해율				협의요율 손해율			
	2005	2010	2013	2014	2005	2010	2013	2014
해상	68.2	55.8	51.9	73.4	78.0	58.3	54.1	79.9
기술	30.3	34.9	25.2	35.5	25.7	33.1	17.2	34.1
책임	25.8	41.8	41.7	52.1	15.2	26.0	28.0	45.2
종합	30.7	47.9	43.8	41.3	27.6	47.2	43.3	40.5
기타특종	38.3	55.1	54.2	65.7	38.7	55.3	54.3	65.7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그림 1〉 2014년 협의요율 손해율 및 비중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과 달리 자유롭게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협의요율은 신고가 면제되고 재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가격경쟁 시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 대신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협의요율을 제공하는 재보험회사를 찾게 되었음.

■ 반면에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요율 수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하였음.

-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기본 요율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함.
- 따라서 보험회사가 특정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자 할 때 원하는 가격에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다.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의 문제점

■ 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

- 자사요율 > 참조순보험요율 > 협의요율의 순으로 요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역방향으로 요율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었음.
 - 자사요율을 사용하면 계속 자사요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면 계속 참조순보험요율 또는 자사요율을 사용해야 하고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는 없었음.
 - 통계를 기초로 한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였음.

■ 요율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한 것은 보험회사가 경험을 축적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나 보험회사가 협의요율 사용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였음.

- 협의요율은 자유롭게 요율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신고면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선호함.

■ 과거 요율규제에서는 판단요율이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언더라이터의 위험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요인이 제한적이었음.

- 판단요율이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임.
-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은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더라이터의 위험분석에 기초한 판단요율이 중요함.

3.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개선 방안 및 평가

금융당국은 요율의 자율성 강화, 보험회사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손해 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협의요율 외에 비통계적 요율 산출법인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함에도 비통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현행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하게 됨.
-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소비자 보호 방안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함.
 -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함.

가. 신고대상상품 축소

■ 기업성보험의 신고면제 조항(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②항)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신고면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표 4〉 참조).

〈표 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목적) 기업성보험의 신고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편법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임.

- (평가) 기업성보험의 특징상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기업성보험이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 개정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음.
-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거나 비통계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스스로 보험계약을 평가하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집단이므로 비통계 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보험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판단요율 신설

-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①항 삭제) 요율을 통계·비통계 요율로 구분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②항 개정) 보험회사 자체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함(〈표 5〉 참조).

〈표 5〉 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②항 개정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통계 요율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언더라이터에 의해 자유롭게 자체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평가) 자체 판단요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 언더라이터의 역량이 중요시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은 비통계 요율로 구분됨으로써 기존에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 사용기준이 삭제되어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②항 삭제).
- (목적) 협의요율 사용 기준이 된 신고면제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요율 사용 기준이 사라짐.

- (평가) 보험회사는 필요시 언제든지 재보험자의 협의요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에서 요율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다. 차별금지원칙 도입(보험업법 요율산출원칙을 준용)

■ 보험계약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게 함(〈표 6〉 참조).

〈표 6〉 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⑥항 신설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동질의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평가) 동질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들이 통계요율 또는 비통계요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인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동질 위험에 적용된 요율과 다른 요율을 사용할 수도 있음.

라. 요율규제 완화 보완대책 도입

〈내부통제기준〉

■ 보험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보험요율의 산출절차와 방법을 관리할 것을 요구함(〈표 7〉 참조).

〈표 7〉 보험업 감독규정 제7-79조의 3 개정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위험관리 및 효율산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임.
- (평가)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의 정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성보험의 특성상 개별 계약물건이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형평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평가)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립금 요구와 더불어 이 조항이 효율 운영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시행령 22조(내부통제기준)의 개정과 함께 내부통제기준이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업계와 논의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도입〉

- 효율 자율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을 쌓도록 요구함(〈표 8〉 참조).

〈표 8〉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 3 ②항 신설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 3 ②항 신설

제7-73조 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목적) 효율자율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평가) 자사요율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협의요율은 재보험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 덤핑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자체판단요율은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효율 덤핑이 가능함.
- (평가) 실제 산출요율이 자사요율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됨.

■ 적립금 반영(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3 ②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의 변화가 가져올 시장의 충격 완화가 예상됨(〈표 9〉 참조).

〈표 9〉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신설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제6-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 (목적) 협의요율 사용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협의요율과 관련해서 일반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충격 최소화임.
- (평가) 보험회사의 충격을 줄이면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의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함.

4. 결론

우리나라 규정개정안은 비통계 요율 사용 시 사후 추가 적립금만이 반영되므로 미국의 자본 규제에 비해 영업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제도임.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는 전략이 요구되어지며,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변화를 위한 규정개정은 크게 요율의 자율성 강화, 보험회사 역량강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로 요약될 수 있음.

- 통계 기반조건을 삭제하고 비통계 요율을 인정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자사요율, 참조순 보험요율, 협의요율의 순서에 상관없이 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비통계 요율 인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일반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되고, 위험평가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내부통제기준의 일관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일반손해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및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질 것임.
 - 전문 언더라이터에 의한 판단요율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언더라이팅 역량이 강화될 것임.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 반영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통하여 덤핑으로 인한 보험시장 혼란을 막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성숙된 몇몇 나라에서는 요율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본규제 혹은 재무건전성 규제를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규모 리스크 대상자 요건과 이들을 대상으로 인수하는 보험회사 요건이 맞는 경우 신고면제하는 제도(ECPs: 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s)⁸⁾를 채택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음.⁹⁾
- 미국 뉴욕주는 2012년에 E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종목은 기업성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뉴욕주 보험법(special risks¹⁰⁾): filing exemption 제6301조-제6304조).
 - 재물보험(Property/Casualty)의 경우 보험회사의 직전 연도 보유보험료(net premium)는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에서 명시된 위험준비금(surplus to policyholders)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회사(지점 포함)는 금융당국에 매년 재무건전성요건을 승인받아야 하며,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200% 이상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최저잉여금이 계약자잉여금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EU는 미국과 같은 보험요율 등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Solvency II 에서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함.

8)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고 있음.

9) 김석영·김혜란(2015), p. 59 참조.

10) Special ris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계약으로 한 종류의 보험종목에 대해서 연간보험료 \$100,000 이상, 또는 연간보험료가 \$100,000이 넘지 않는 보험종목 2건 이상의 합계 연간보험료 \$150,000 이상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규정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통계 요율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평가 반영으로 대비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 규제에 비해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로 평가됨.
 - 보험회사는 사전적인 자본 규제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는 대신 사후적으로 추가 적립금만을 반영함으로 자율성이 보다 높음.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통한 감독뿐만이 아니라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하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험요율을 산출을 요구하는 것임.
 - 보험회사가 시장의 경쟁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이번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변화는 일반손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각사의 역량에 맞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험통계와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언더라이팅 역량을 갖춘 회사는 회사자체의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율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
- 자체 판단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보다 의존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있는 협의요율을 찾는 가격협상력 향상이 요구됨.
 - 또는, 특정 종목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여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일반손해보험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일반손해보험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판단요율이 허용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을 전망함.
 -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되어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임.
 -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되어 재보험 수지차도 개선되고 해외 진출 시 보험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참 고 문 헌〉

- 김석영·김혜란(2015),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 금융감독원(2012), 『FY12 상반기(12. 4월~9월) 재보험 실적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
- _____ (2013),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방안』.
- _____ (2014a),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개선 추진방안』.
- _____ (2014b),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
- 보험개발원(각 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http://www.dfs.ny.gov/insurance/dfs_insurance.htm).